

5.

6. <2010.6.29>

7. <2003.8.26>

8.

가. 가 13 1

()

. 13 2 1 3 「 」 33

2 1 .

2 「 」 21 1

.< 2007.12.31 >

3 () 1 가

(2 가), 가 2 1

.< 1999.9.1 >

1. 가

2.

3. (.)

100 50 2 1

4 () .

13 1 6

.< 1999.1.25, 1999.9.1, 2007.12.31 >

1 2

.< 2007.12.31 >

. 2 . ,

가 ,

.< 2007.12.31 >

.< 2007.12.31 >

5 () . 가

.< 1999.1.25, 1999.9.1,

2007.12.31 >

1. 가

2.

3. 가 2 3

6 () . 9

. < 1999.1.25, 1999.9.1, 2001.8.28,

2007.12.31 >

1.

2. .

3.

7 () . 10

2

24 3

. (" ") .

[2007.12.31]

8 () 11

. < 1999.9.1, 2003.8.26, 2007.12.31 >

11

. < 1999.9.1 >

1.

2.

3.

4. . ()

9 () 9 2 1 (

) () 3

4 . < 2007.12.31 >

9 2 2

5 () . 87 1

1 . < 2007.12.31 >

2 ()

. < 2001.8.28, 2002.9.18, 2004.11.29, 2005.1.15, 2006.8.7, 2007.12.31 >

1. . : ()

2. :

가. ()

. 「 」 33 ()

3. :

가. ()
2 2 3 가

4. :

5. 가 : 가

<2007.12.31>

2 4 .< 2002.9.18, 2006.8.7>
9 2 3

6 () .

.< 2002.9.18, 2004.11.29, 2006.8.7>

<2007.12.31>

<2007.12.31>

[1999.9.1]

10 () 12 1 8 .

[1999.9.1]

10 2() 12 2 2
9 .

< 2007.12.31>

1 2 2 .
2 3 4 , 4 6 .
. 12 2 2

.< 2003.8.26, 2007.12.31>

1.

2.

3.

4. ()

. 12 2 2

.< 2003.8.26>

[2002.9.18]

11 <2003.8.26>

12 () 5 . 6 . 9 10 「 」

11 3 17

.< 1999.9.1, 2003.8.26>

13 () 18 9 1
. <

[1999.9.1 >](#)

14 () , . . ,
16

[[2007.12.31](#)]

15 <[1999.9.1](#)>

16 <[1999.9.1](#)>

17 <[1999.9.1](#)>

18 () 17 1 1
14 . 87

1 1 () . <

[2007.12.13, 2007.12.31 >](#)

1 . < [2000.7.10,](#)

[2010.6.29 >](#)

1.

2. 2 2 ()

3. 18

4.

5. 가 (가)

6. 「 가 」 「 가 」

가 가 가

2 4 . < [2002.9.18 >](#)

18

. . , 50 1

(" ") . < [2003.8.26,](#)

[2007.12.31, 2008.12.31 >](#)

1.

2.

3.

4. , ()

• 87 1 1 17 1 1

가 13

가

.< 2002.9.18, 2007.12.31 >

1.

2.

3. 18 20

• 가 •

1 .< 2002.9.18 >

1.

2.

3. 가 가

4. <2002.9.18 >

5. <2002.9.18 >

• 17 1 1

.< 2003.8.26, 2007.12.31 >

1.

2.

3. , ()

[1999.9.1]

19 () 17 1 2

가 15

• 87 1 1 ()

) .< 2007.12.13, 2007.12.31 >

1

1.

2.

3.

4. 2 2 ()

)

2 4 18 5 2 .< 2002.9.18,
2005.6.30>

• 17 1 2

.< 2003.8.26, 2007.12.31>

1.

2.

3.

[1999.9.1]

20 () 17 4

16

60

•

87 1 1 () .<

2007.12.31, 2010.6.29>

1

.

1.

2.

2 2

(

)

2 4 18 5 2 .< 2002.9.18,

2005.6.30>

• 17 4

.< 2003.8.26, 2007.12.31, 2010.6.29>

1.

2.

3.

[1999.9.1]

20 2() 20 2 1

16 2 .

1

.

[2005.6.30]

20 3() 20 2 2

•

.< 2007.12.31>

20 2 2

1.

2.

3.

4. ()

5.

[2005.6.30]

20 4 <2007.12.31>

21 () 22 3 17

17 2 . < 2010.6.29 >

[2007.12.31]

22 () 23 3 가

2 15 (2 2 4 15 , 5 31) 18

() 87 1 2

. < 2005.6.30, 2007.12.31 >

1 () .

, 「 」 21 1

. < 2000.7.10, 2002.9.18, 2005.1.15, 2005.6.30,

2007.10.15, 2007.12.31, 2008.3.14, 2008.6.5, 2008.12.31 >

1.

가. 가· 가· 가

19 ()

「 」 2 3

). , 가· 가· 가 20

87 1 2 ()

「 」 2 3)

. 가 (1) (2)

(1) 19 . ,

()

(2) . ,

. 가 가 ·

. 가

19

가

19

. 「 」 「 」 23
가 19

. 3 1 2 가 , 가
가 가 가

2.

가. 「 」 「 」 (「
」 6 20 2 가
가 2 7 가
)

. 「 」 3
. 「 」 7 24

3. 21

4. 22 . (.
)

[[1999.9.1](#)]

23 (가) 23 1 1
가 . , 가

가 . < [2008.3.14](#) >

1 3 (. .
) , , , 61 가 ,
, . ,

가 1 ,

2 가 . < [2002.9.18, 2005.1.15, 2007.12.31](#) >

17 1 1 1 2

가 . , 가 18 6 1

. < [2003.8.26](#) >

17 4 , 18 6

, . ,
1 2 가

가 .< 2003.8.26, 2010.6.29 >

4 가 ,
,
가
(6 · 6 2 7 2 1
) .< 2002.9.18, 2007.12.31 >

1. 29 2 (6
2)

2. 29 4 1 가

3. <2007.12.31 >

4. 가

5. 26 1 가 .

6. 29 1

6 2. 29 3

7. 가

가 .

[1999.9.1]

24 () 23 가

.< 2003.8.26, 2005.1.15 >

1. ()

2.

3.

4. 가 가 · 가 · 가 가

5. ·

6.

23 4 7 31 , 87 1

2 .< 1999.1.25, 2002.9.18,
2007.12.31 >

87 1 2

, .< 1999.9.1,
2007.12.31 >

25 () 87 1 2

가

. < 1999.9.1, 2007.12.31, 2008.3.14 >

1

.<

1999.9.1, 2005.1.15 >

1. : • , , , , • , • • , •

2. : , , , • ,

3. • : , , , • , •

•

4. : ,

1

2

3

.< 1999.9.1 >

25 2(가•) 23 2 2

가

2 15 (2 4 5 4

15) 22 2 가• 87 1 3

. < 2007.12.31 >

1

.< 2005.1.15, 2005.6.30,

2010.6.29 >

1. ,

2. 22 3

3.

4. 22 4

5.

가. 「 」 「 」 (「

」 6 20 2

가 2 7 가

)

. 「 」 3

. 「 」 7 24

6. 22 5

7. 가· 가 .

8. 「 」 2 5 (가 가
 , " ")가 가 가
 1 2 .

.< 2008.3.14>

[2002.9.18]

25 3() 23 2 2 " "

1 . < 2005.1.15>

1. 「 」 1

2. 「 」

3. 「 」

4. 「 」

5. 「 가 가 」 가 가

6. 「 가 」 (「 」 1

)

[2002.9.18]

25 4() 23 2
 가 . < 2005.1.15, 2008.3.14,

2010.6.29>

1. ()

2.

3. <2003.8.26>

4.

5. . .

6.

7. 9 , 「 」 , 「 」

「 」

. .

8.

9. 가 가 가

1 8 31 ,

.< 2008.3.14>

[[2002.9.18](#)]

25 5() 30 2 4 () 22 6 . < [2007.12.31](#) >

1

1. 가

2.

[[2005.6.30](#)]

25 6() 29 4 2 가 " 100 20

. < [2008.3.14](#), [2008.6.5](#) >

1.

가.

가 「 」 18

.

가 「 」 87

.

1 가 .
1

.

가 ,

.

가 「 」 87 「 」
21 (가)

.

16 3 3

.

. 가

가

가

, , ,

2.

가. (" ")

· ,

32 4

.

,

,

[[2007.12.31](#)]

26 () 32 1 () 23
() () 23
23 2 . < [2007.12.31](#) >
1 . < [1999.9.1,](#)
[2003.8.26, 2007.12.31](#) >

1. ()

2. () · 가

3.

4. 가

1

. <

[2007.12.31](#) >

1. ()

2. 25 6 2 가

3. 25 6 2

27 <[2005.6.30](#)>

27 2() 31 1 "

"

(

가

.

가가) 100 82 . < 2008.3.14 >

[2005.6.30]

27 3() 34 2 3 4 24
24 2 .

[2007.12.31]

27 4(.) 32 4
가 , 가

[2007.12.31]

28 () 34 2

100 10

1. 4 :

2. 4 가 가 2 :

= -
x 4
()

3. 4 가 가 2 :

= -
x x 2
() 가 ()

34 2 " "

.< 1999.1.25, 1999.9.1, 2002.9.18,

2005.1.15, 2005.6.30, 2008.3.14, 2010.6.29 >

1. 48 2 (「
」) 4
가

2. 가 가

3. <2002.9.18>

4. 1 4

5. 가 . .

54

() 34 5

. , 26

1 가

.< 2010.6.29>

1.

2.

3.

4. , ()

5. (가 . 34 4

)

6.

1

54

.<

2007.12.31 >

29 () 35 1 3 "

100 82 . < 2005.6.30, 2008.3.14 >

35 1 3 5

.< 1999.1.25, 1999.9., 2007.12.31 >

1. 35 1 3 가

가. 34 1

.

,

.

5

2. 35 1 3
가. 29 5 1 1 3

1

3. 35 1 4
가.

가

가

15

4. 35 1 5
가. 29 5

1 1 3

34 2

.가

30

가 28

2

, 2 가

35 2 2 3

」 4

. " " " " , " " " " .<

[2007.12.31 >](#)

35 4

가

.< [1999.9.1,](#)

[2007.12.31 >](#)

2 4

가

69

.< [2007.12.31 >](#)

30 () 34 5 3 ,
1 () ,
가 .

[[2010.6.29](#)]

31 () 35 5
7 25
1
가 .

32 () 42 1 3
42 2 " " 1
. < [2007.12.31, 2008.3.14](#) >
42 2 ,

- 1.
- 2.
3. (가·)
4. ()
5. ()
- 6.
7. .

[[2002.9.18](#)]

33 () 49 2 " "
. < [2002.9.18, 2003.8.26, 2005.1.15, 2008.3.14, 2008.12.31](#) >

- 1.
2. <[2003.8.26](#)>
3. 「 」 「 」 50
(「 」) 2

34 () 49 4 26 .

35 () 66 27 .
1

1. ()
2. 가

35 2() 70 2 3 " "
. < 2008.3.14 >

1. 가 10
2. 10
3. , ,
10

[2007.12.31]

36 () 82 1 1 " "
1 5 . , 1
1 5 1 . < 2008.3.14 >

36 2() . 81 83 . .
. < 2008.3.14 >

1. . .
 2. 가
- [2007.12.31]

36 3() 85 3
. . < 2007.12.31 >

1. 85 3
 - 2.
 - 3.
 4. ()
 - 5.
- [2005.6.30]

36 4(.) 86 3 1 . . <

2008.3.14 >

- 1.
- 2.
- 3.
- 4.
- 5.

[2007.12.31]

37 <2007.12.31>

38 () 92 1 • 2 7

5 .

92 3 • 3 2 4

87

가• , 가•

.< 2002.9.18, 2003.8.26,

2008.3.14 >

1

. , •

•

.< 2004.11.29, 2007.12.31 >

[1999.9.1]

39 () 89

「

」

,

. , 86

•

.< 2005.1.15 >

[1999.9.1]

< 113 ,1997. 8. 2 >

1 ()

2 ()

3 () 11

4 ()

18 3

가

5 () 27

29 1

6 () 28

7 (가) 1

15 2

1. 가 12 2 1

2. 가 15 2

3. 51

4. 19 1

5. 56 2

6.

8 (가) 1998 6 30

가 1 2

가 가 .

9 ()

< 164 ,1999. 1.25 >

< 208 ,1999. 9. 1 >

() .

()

9

< 247 ,2000. 7.10 >

() . , 1 2 2000 8 1 .

(가) 2001 7 31 1

1 2 2001 7 31 .

1. 9 가

2. 23 3 가

3. 23 4

가

< 295 ,2001. 8.28 >

< 332 ,2002. 9.18 >

()

() 18 6

() 33 3

(가) 1 2 2002
가

< 371 ,2003. 8.26 >

() , 8 1 • 10 2 4 • 18 7 • 19 4
20 4 2003 9 1

() 2 2
7 11 2003 12 31

< 411 ,2004.11.29 > ()

< 422 ,2005. 1.15 >

< 444 ,2005. 6.30 >

2005 7 1 , 25 5 2006 1 1 , 27
2008 1 1

< 530 ,2006. 8. 7>()

< 551 ,2007. 3.19>()

< 584 ,2007.10.15>()

< 594 ,2007.12.13>()

< 598 ,2007.12.31>

- 1 () 2008 1 1 .
- 2 () 25 6
- 3 (가) 가

1 28

87 1 2

1. ()

29 ,

2. 1

가

16 3 3

60

1. 1 : 1
1
가
가 2

2. 1 : 1
1
가
가 2

3. 1 : 1
1
가
가 2

3 30
87 1 2 31
1. , 87 1 2 가
22
2005 2006 , ,
3
가 , 87 1 2

2. 1 () ()
)
1 3 2005 2007 23
, 3 2005 2007
가
1 4 가
가 가
가

1.

2.

23 5

가 1 3

1.

:

2.

:

3.

:

4

(

)

23 6

< 4 ,2008. 3.14>(

가

)

< 16 ,2008. 6. 5>

1 ()

2 (

) 25 6 1

< 85 ,2008.12.31>

3

.

,

22

2

33

3

< 89 ,2008.12.31>(

)

1 ()

2009 1 1

2 (

)

22 2

"

"

"

"

<22>

< 221 ,2010. 2.16 >

1 () .

2 () 1 2 가

< 255 ,2010. 6.29 >
2010 6 30 .

[별표 1] <개정 2010.2.1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그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공능력평가액} = \text{공사실적평가액} + \text{경영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영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times 75/100$$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경영평점} = (\text{유동비율평점} + \text{자기자본비율평점} + \text{매출액순이익률평점} + \text{총자본회전율평점}) \div 4$$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일반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기술능력생산액}(\text{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보유기술자수} \times 30/100) + \text{퇴직공제불입금} \times 10 + \text{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일반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수에 1.7, 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pm 25/100$ 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 (2)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 (3)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 (4)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지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중에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7)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지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 (8)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10) 일반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 이상의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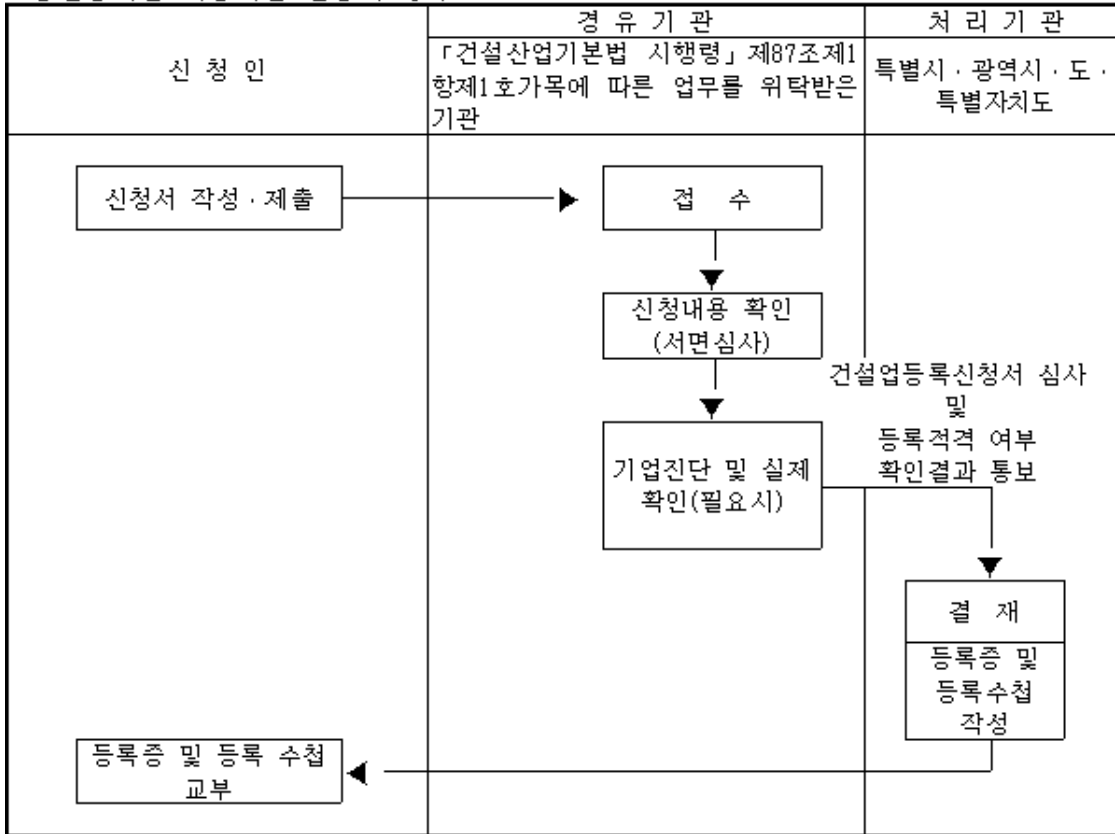
건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인)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청업종		⑧등록한 건설업	(번호)
⑨공제조합출자		⑩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p>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p> <p>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의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의명세서와 그 증빙서류</p> <p>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들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p> <p>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p> <p>(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p> <p>(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p> <p>(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p> <p>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p> <p>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p> <p>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p> <p>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들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p> <p>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p>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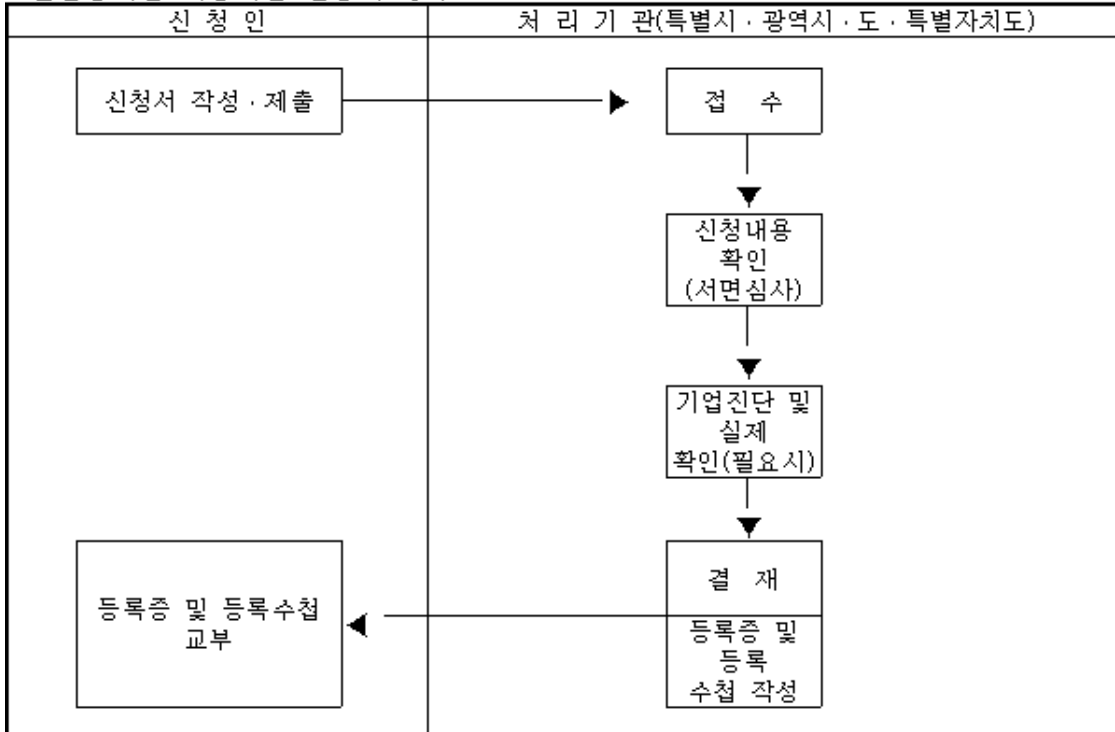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08.12.31>

기관명

우	주소	/전화()	/전송()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

업 체 현 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조직형태	주식 <input type="checkbox"/> 유한 <input type="checkbox"/> 합명 <input type="checkbox"/> 합자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납입자본금			설립일자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신청일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비 고	
1					
2					
3					
4					
신청업종현황					
연번	업종명	비 고			
1					
2					
임 원 현 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포함)								
연번	시설명	실면적(m ²)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 <input type="checkbox"/> 기업진단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개시대차대조표 <input type="checkbox"/>							
기준일	년 월 일							
자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잉여금						백만원	
	이익잉여금						백만원	
	자본조정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심사결과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현황	적정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기타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 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사무실	보유 여부(o, x)						m ²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최종 심사의견								

[별표 2] <개정 2010.2.1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그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공능력평가액} = \text{공사실적평가액} + \text{경영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영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times 75 / 100$$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경영평점} = (\text{유동비율평점} + \text{자기자본비율평점} + \text{매출액순이익률평점} + \text{총자본회전율평점}) \div 4$$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

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 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기술능력생산액}(\text{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보유기술자수} \times 30/100) + \text{퇴직공제불입금} \times 10 + \text{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수에 1.7, 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기능장인 경우에는 1.5)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pm 25/100$ 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 (3)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지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6)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지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상호			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납입 자본금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사항 신고수리일	등록사항 차기 신고기간	비고							
	제 호											
	제 호											
	제 호											
기 본 현 황												
임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기일자		퇴사일자				
기술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기술등급 및 자격현황		입사일		퇴사일		
시설(사무실 포함)현황						장비현황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장 비 명		등록번호		규격	취득일 자	
대차대조표 (기준일 :)												
자산 총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부채 총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자본 조정		
손익계산서 (시작일 : , 종료일 :)												
매출 액	매출 원가	매출 총 이익	판매비 와 관리비	영업 이익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	경상 이익	특별 이익	특별 손실	법인세 차감전 이익	법인세 등	당기 순이 익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변경 사항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변경, 전입·전출 등)							
신고일	신고 수리일	구분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변경일		
행정 처분 사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등)							
처분내용	사유	처분근거	처분기관	처분일			
양도·합병·상속신고 사항							
신고일	신고 수리일	구분	업종	업종등록 번호	양수(합병, 상속)인	양도(피합병, 피상속)인	양도 (합병,상속) 일자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사항							
신고일	신고 수리일	신고업종		업종 등록번호			
건설업 폐업 신고 사항							
신고일	신고수리 연월일	폐업업종	업종 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교부사항							
매체종류	구분	업종	등록번호	교부일	수령인		
<input type="checkbox"/> 서류 <input type="checkbox"/> 전자카드							

[별표 3] <개정 2007.12.31>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공사명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내용·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다.	

건설업등록증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주된영업소소재지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국적또는 소속국가명 :			등록일자 :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input type="checkbox"/> 원 ○○도지사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행정 처 분 사 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처 분 내 용	사 유	처 분 기 관 (처 분 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신 고 일	신고수리일	차기 신고기간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제2쪽)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건설업등록수첩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주 된 영 업 소 소 재 지		법 인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국 적 또는 소 속 국 가 명		등 록 일 자	
<p>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특별시장 ○○광역시장 [인] ○○도 지 사</p>			

105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제3쪽)

행정 처분 사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신고일	신고수리일	차기 신고기간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시 공 능력

연 도	공사의 종류	금 액 (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공사금액의 하한

연 도	공사의 종류	금 액 (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별표 5] <개정 2005.1.15>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신 청 내 용	수 수 료
1. 건설업등록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만원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다. 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을 제외한다)	2만원
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1만원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	2천원
3. 건설업분쟁조종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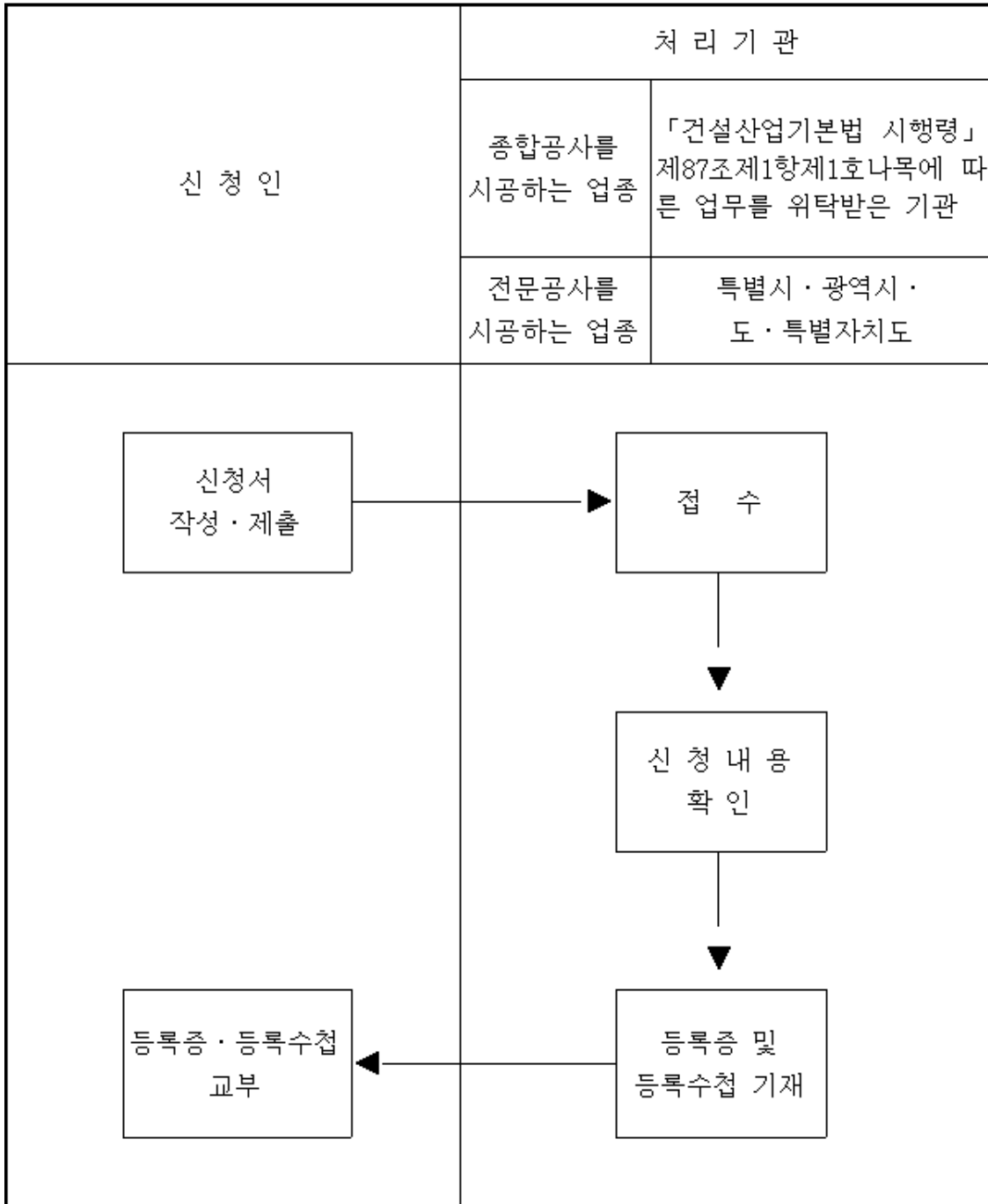
주요공종별공사실적						
공종별		연도별				
		토 목	도로·교량			
댐						
항만						
공항						
철도·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그 밖의 토목공사 분야						
건 축	주거용					
	상업용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그 밖의 건축공사 분야					
산 업 · 환 경 설 비	산업생산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환경 설비공사 분야						
조 경	수목원					
	공원 조성					
	그 밖의 조경공사 분야					
비 고						
기록연월일·기록자(서명 또는 인)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등록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업 종			⑧등 록 번 호	
⑨재교부신청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 칙 별표 5의 수수료	

30300-07911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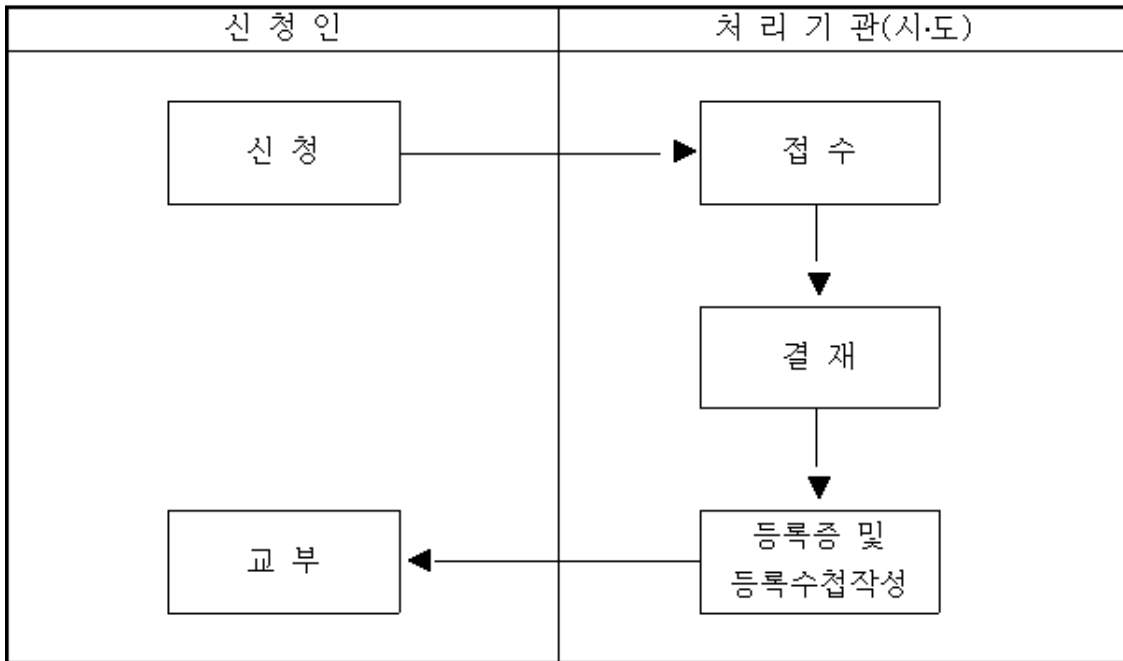
99.7.8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뒤 쪽)

시공능력 및 공사금액의 하한					
시 공 능 력			공 사 금 액 의 하 한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백만원)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백만원)

행정처분사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부도·압류·소송 등)			
처 분 내 용	사 유	처 분 기 관 (처 분 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등록대장					
업 종	등록번호	등 록 일	등 록 사 항 신고수리일	등 록 사 항 차기신고기간	비 고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공제조합출자		투자율(외국인의 경우)			
변 경 사 항					
구 분	변경내용	변경일	구 분	변경내용	변경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①상 호 ③영업소 소재지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②대 표 자 ④전 화 번 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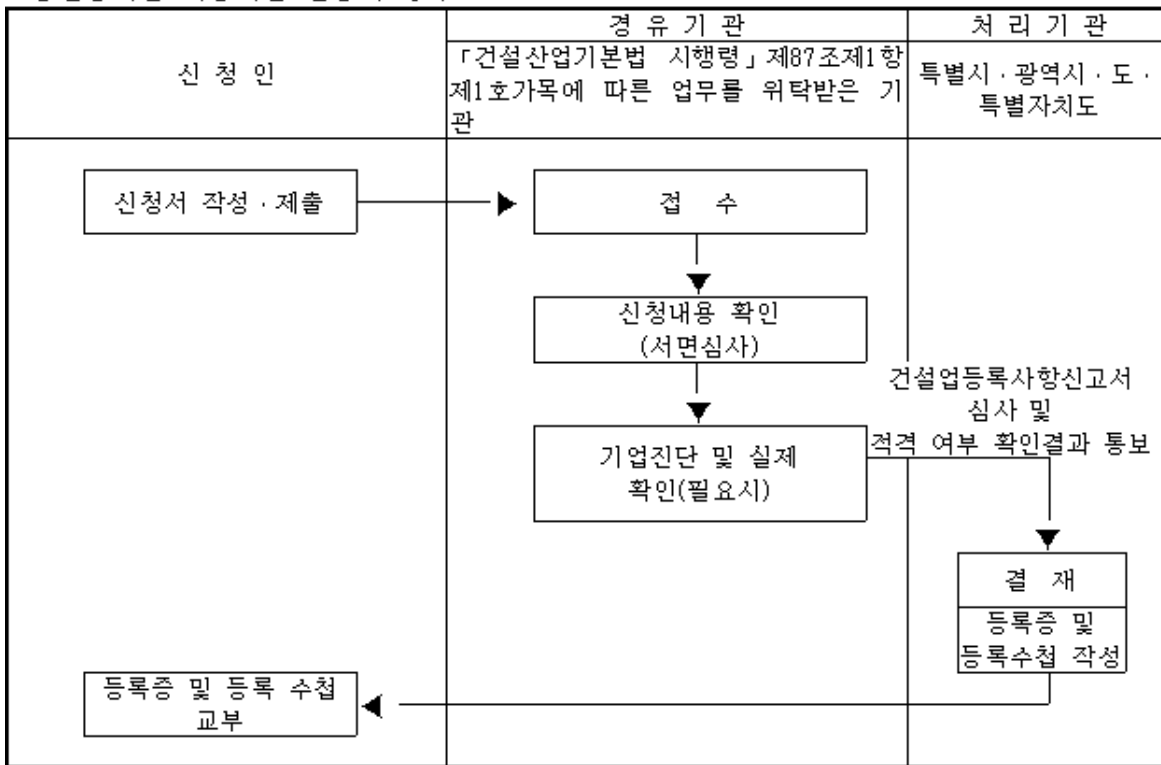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9.1>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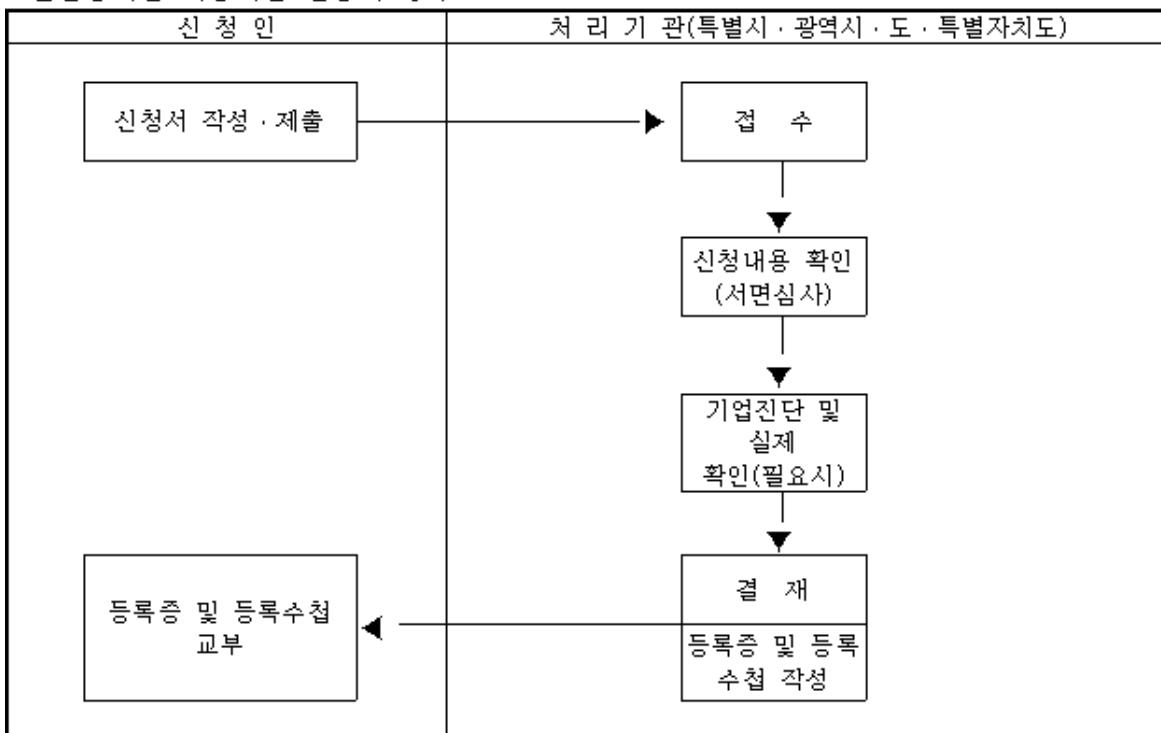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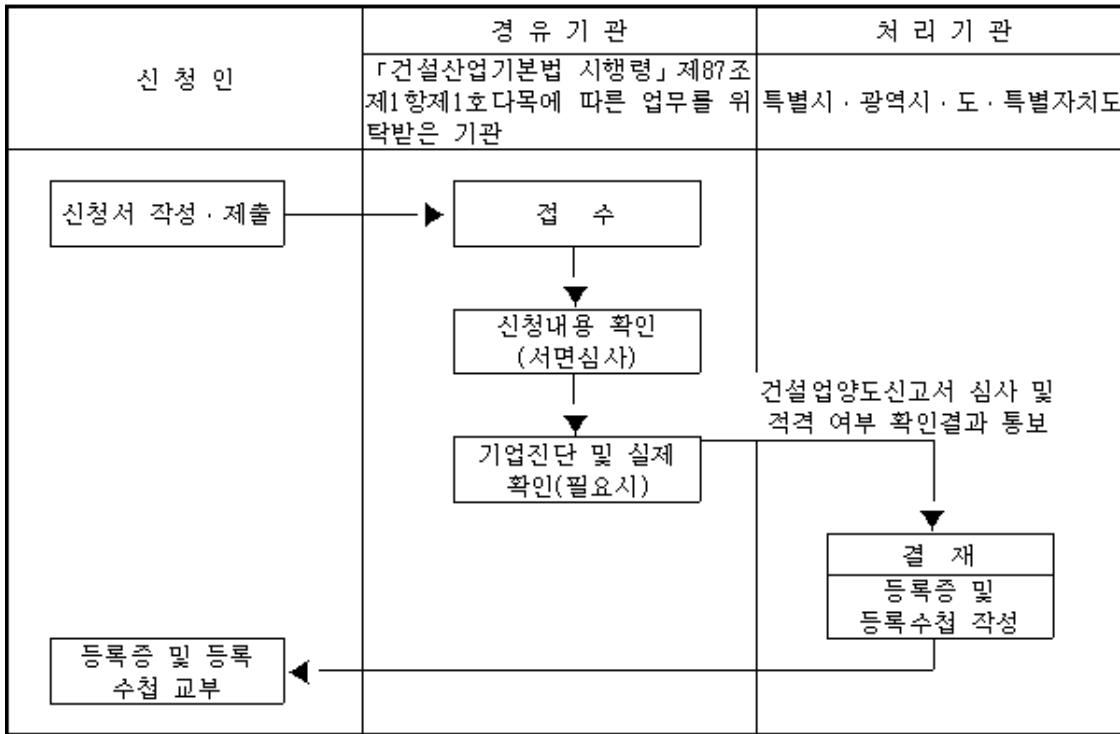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1999.9.1>

건설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양수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p>「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양도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양수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p>1. 양도계약서 사본</p> <p>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p> <p>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p> <p>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p> <p>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p> <p>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p> <p>(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p> <p>(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p> <p>(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p> <p>(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p> <p>(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p> <p>(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p> <p>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p> <p>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p> <p>(1)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p> <p>(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p> <p>3.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p> <p>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p> <p>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p> <p>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p>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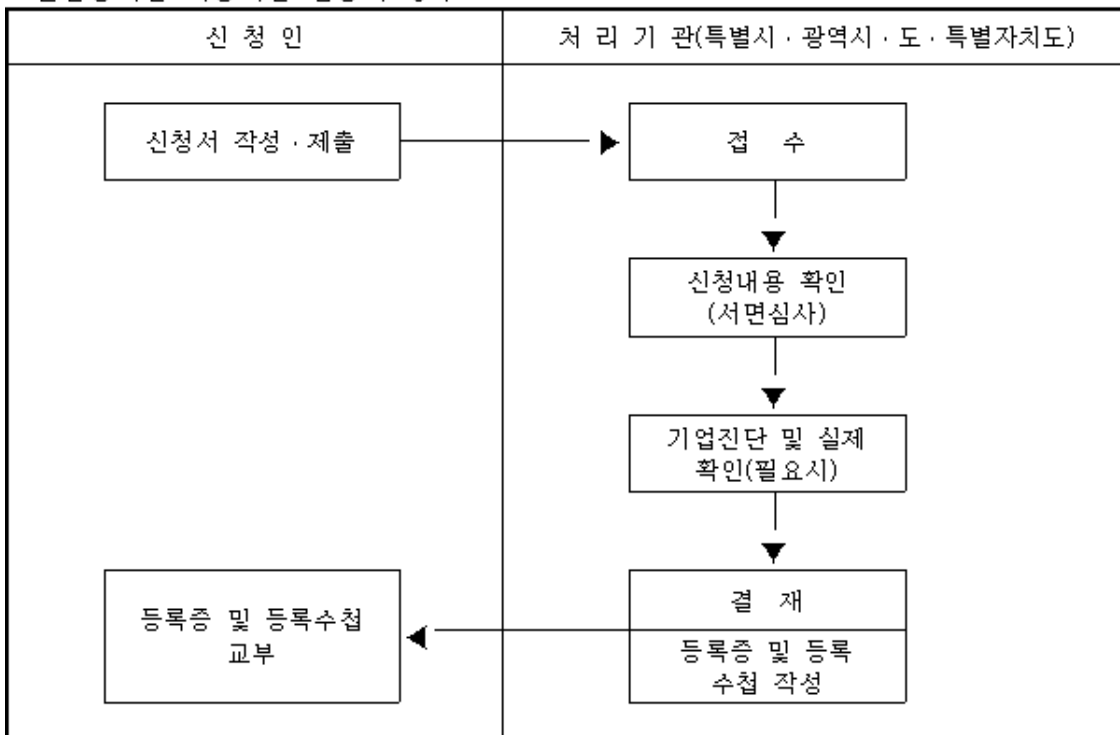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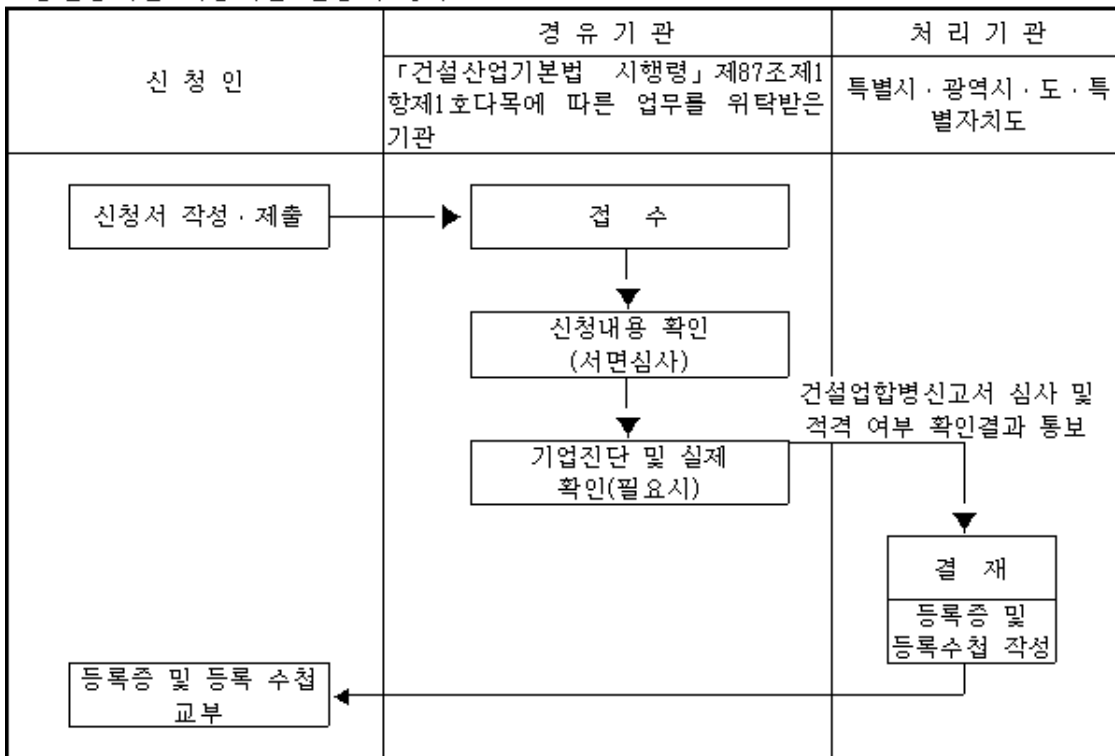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업종		⑧ 등록번호
합병 법인	⑨ 상호		⑩ 대표자
	⑪ 영업소소재지		⑫ 전화번호
	⑬ 법인(주민)등록번호		⑭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 업종		⑯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⑰ 상호		⑱ 대표자
	⑲ 영업소소재지		⑳ 전화번호
	㉑ 법인(주민)등록번호		㉒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㉓ 업종		㉔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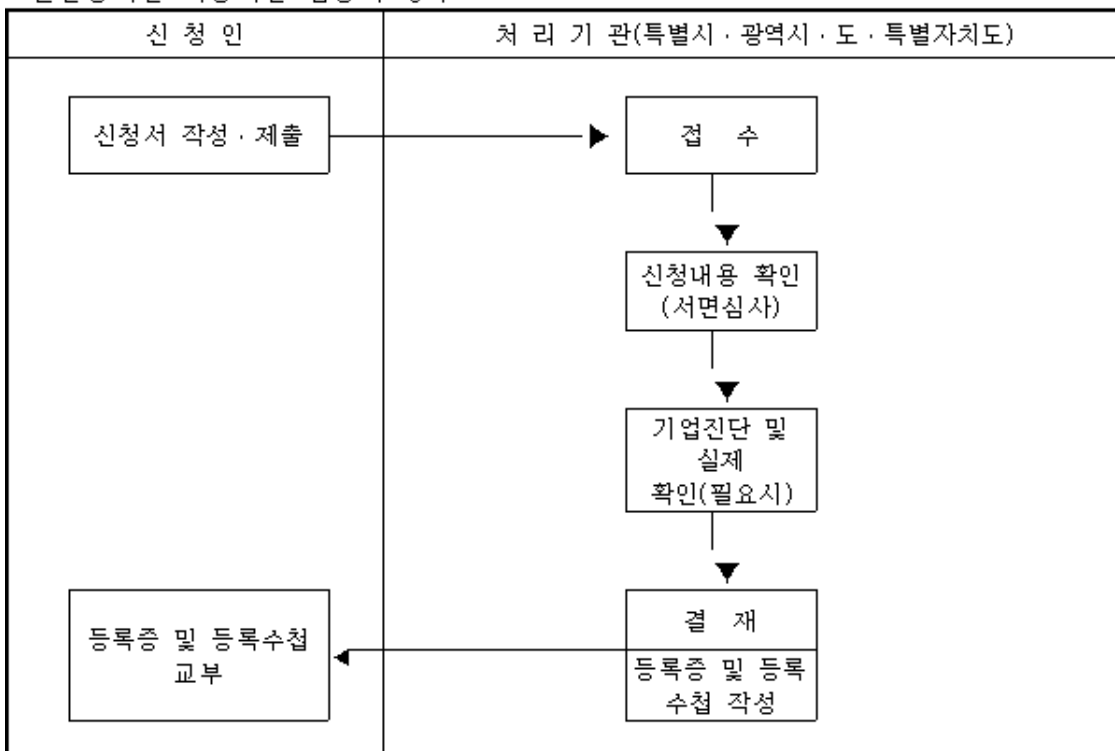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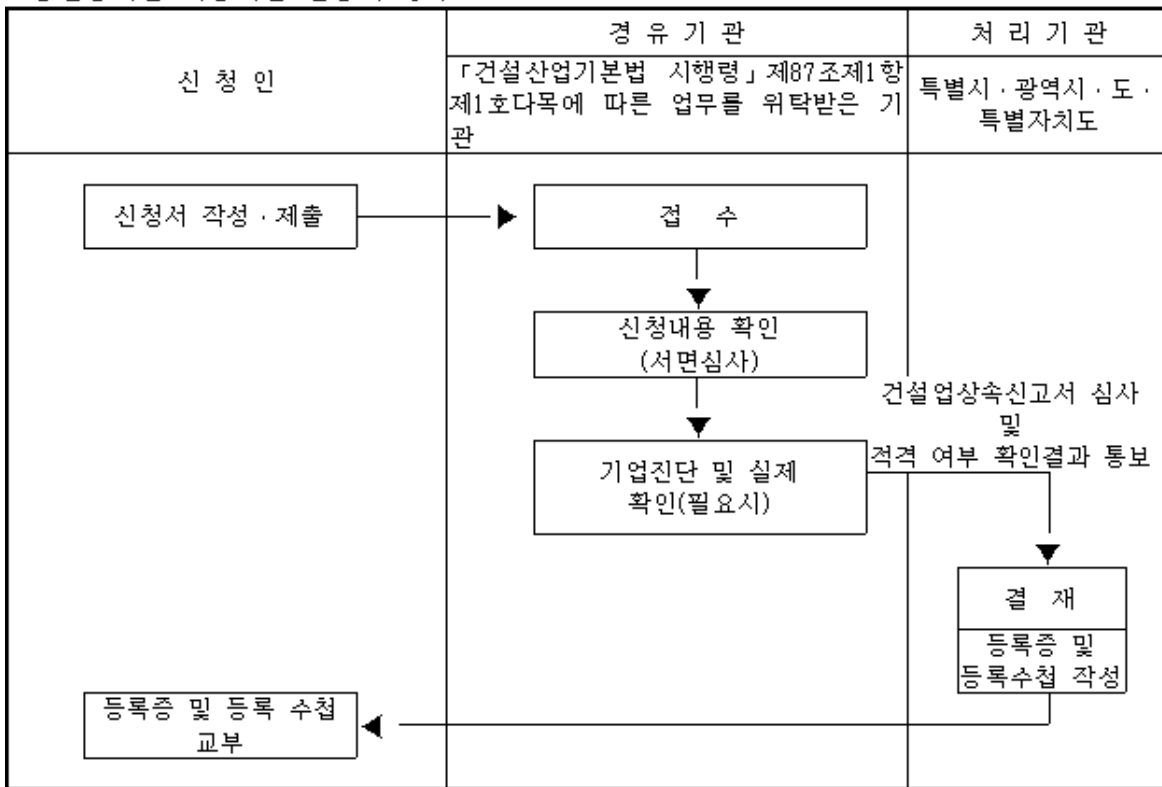
건설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7일
피 상 속 인	①상 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사망일자
	⑤상 호		⑥영업소소재지
	⑦업 종		⑧등 록 번 호
	⑨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⑩전 화 번 호
인 상 속	⑪성 명		⑬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⑭전 화 번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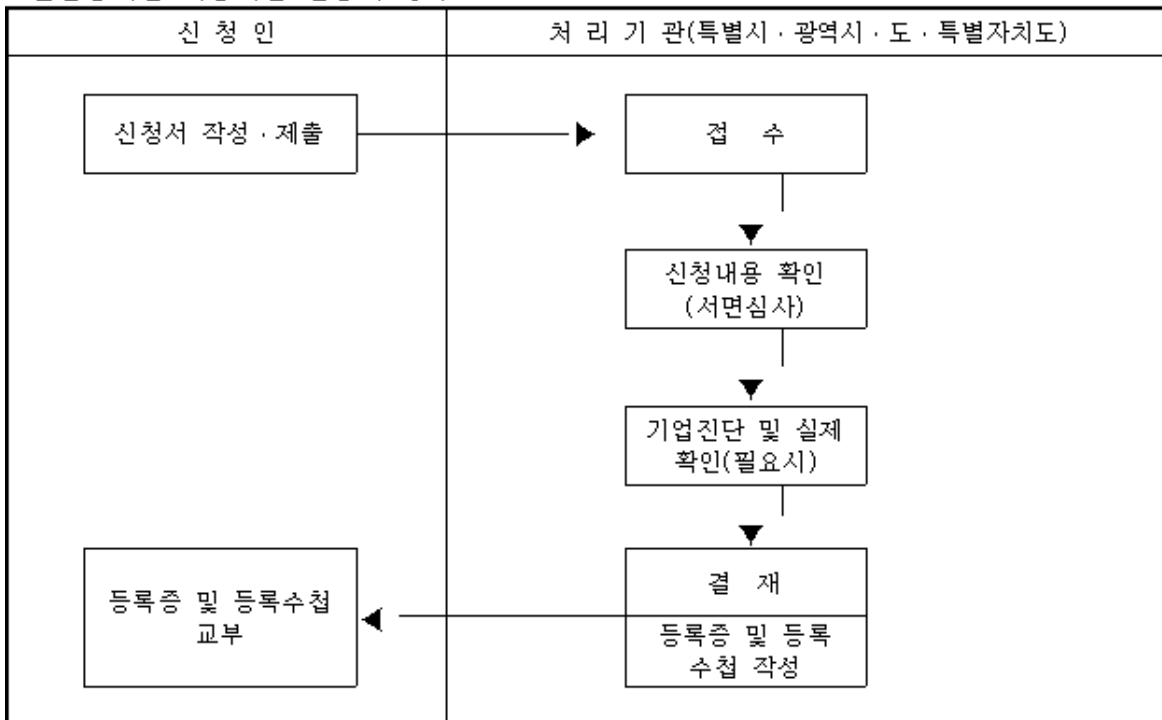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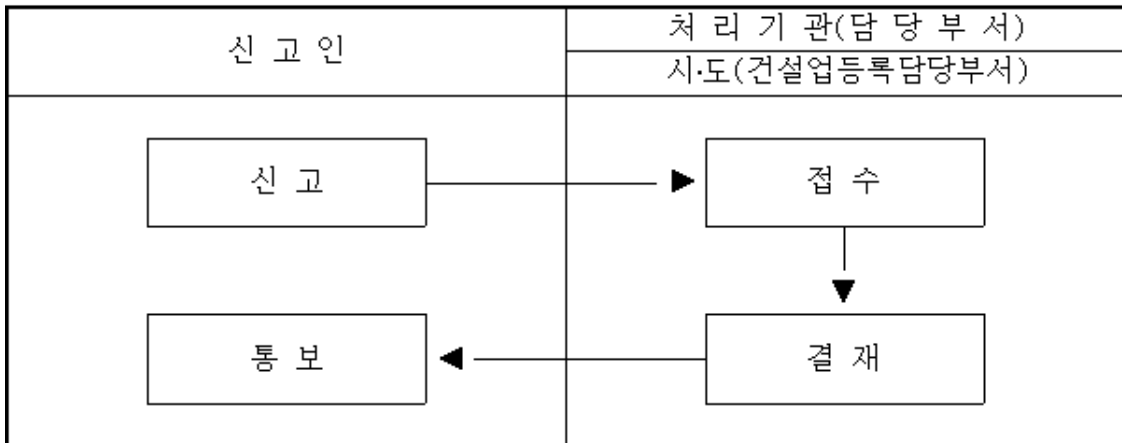


건설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⑦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 종 명	등 록 번 호	
⑧폐업 사유	1. 당사사정 <input type="checkbox"/> 사업포기 <input type="checkbox"/> 회사부도·파산		
	2. 업종전환 <input type="checkbox"/>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 등록하여 기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input type="checkbox"/>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 등록하여 기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input type="checkbox"/>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기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input type="checkbox"/> 기타사유()		
⑨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 업종 외 보유업종)	업 종 명	등 록 번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공공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②산재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③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input type="checkbox"/> 단독도급 <input type="checkbox"/> 공동도급 (<input type="checkbox"/> 공동이행방식 <input type="checkbox"/> 분담이행방식 <input type="checkbox"/>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input type="checkbox"/> 장기계속 <input type="checkbox"/> 계속비 <input type="checkbox"/>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input type="checkbox"/> 일반		
입찰방법	<input type="checkbox"/> 적격심사 <input type="checkbox"/> 최저가 <input type="checkbox"/> 턴키 <input type="checkbox"/> 대안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약방법	<input type="checkbox"/> 제한경쟁 <input type="checkbox"/> 일반경쟁 <input type="checkbox"/> 지명경쟁 <input type="checkbox"/> 수의 <input type="checkbox"/> 기타

①공종: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세 부 공 종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수목원
	고속화도로	저층아파트(5층 이하)	산업생산시설	공원의 조성공사
	고속도로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원자력발전소	그 밖의 조경
	도로교량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화력발전소	
	철도교량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열병합발전소	
	댐	상가·백화점·쇼핑센터	수력발전소	
	항 만	사무실빌딩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공 항	오피스텔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일반철도	인텔리전트빌딩	하수종말처리장	
	고속철도	호텔·숙박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지하철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도도터널	관공서건물(12층 이상)		
	철도터널	학교		
	간 척	병원		
	치산·차수 및 시방하천	전통양식건축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상수도 1천mm 이상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상수도 1천mm 이하	경기장·운동장		
	정수장	전시(展示)시설		
	하수도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택지조성	공장 작업장용 건물			
공업용지조성	기계기구 설치(클래프트 제외)			
그 밖의 토목시설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②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2. 도급계약내용										
가. 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변경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일자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나. 도급계약(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적습니다)										
구분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공사 기간 (일)	도급 금액	낙찰 률	변경 사항			
							변경 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도급계약 (총공사)										
당 차 년	()차									
	()차									
	()차									
다. 공동도급 지분을 및 분담내용(공동도급공사인 경우)										
업체명	지분을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									
	%									
	%									
라. 보증금										
예치업체	예치일	④보증종류	⑤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 번호	보증서 발급일	보증 채권자	
④보증종류: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⑤예치방법: 보증서, 현금, 유가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그 밖의 예치방법을 직접 기재합니다.										
마. 공사대금지급조건										
공사대금 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회	준공금 지급조건	준공 검사 후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일 이내							
바. 연대보증인										
상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3. 하도급계획 내용

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획

입찰금액		원		
㉔하도급할 내역공종	원도급 내역금액	하도급 예정금액	㉕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	㉖하도급자 주요 선정기준

나. 계약시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획

하도급 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㉔내역 공종	㉕원도급 내역 금액	

- ㉔하도급할 내역공종: 공사내역서에 준하여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요 공종별로 기재합니다.
 예시) • 토목공사: 토공, 비탈면 안정공, 배수공, 구조물공, 터널공, 포장공, 교통시설안전공, 그 밖의 토목공사
 • 건축공사: 공통가설공사,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갑공사, 품질시험비, 골재비, 운반비, 설비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등
 •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등의 공사의 경우에는 각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㉕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1. 일반경쟁 2. 제한경쟁 3. 지명경쟁 4. 수의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㉖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1. 실적 2. 협력업체 3. 시공능력평가액 4.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㉕원도급내역금액: 공사내역서에 명시된 해당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기재합니다.

4.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사항

구분	수령 업체	회차	기성 검사일	기성 금액	수령일	선금 정산액	수령 금액	수령금액 누계	잔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5.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⑩담당업무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⑩담당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을 기재합니다.													
나. 하도급계약(재하도급 포함)													
하도급준업체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금액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민)등록번호	현장기술자	⑪대금지급방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⑫교부여부	⑬교부내용	⑭미교부사유
					원								
					원								
					원								
⑪대금지급방법: 원도급 업체 지출, 발주자 직접 지출 ⑫교부여부: 교부, 미교부 ⑬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률 등 보증서내용을 기재합니다. ⑭미교부 사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1.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협력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2.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1건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 4. 발주자 직접 지출 5. 기타(미교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재하도급업체인 경우에는 대금지급방법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여한 업체		⑯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⑰대여기간		⑱대여금액					
								원					
								원					
								원					
⑯건설기계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⑰대여기간: 건설기계별로 기재하며, 실제 대여금액이 월 또는 일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⑱대여금액: ⑰대여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라. ⑳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납품한 업체	납품받은 업체	법인(주민)등록번호	납품일	제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품금액					
								원					
								원					
㉑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 변경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등).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공사명		(원 공사명: _____)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공공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 등록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협력업자 등록년월일	
②산재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③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input type="checkbox"/> 단독도급 <input type="checkbox"/> 공동도급 (<input type="checkbox"/> 공동이행방식 <input type="checkbox"/> 분담이행방식 <input type="checkbox"/>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input type="checkbox"/> 제한경쟁 <input type="checkbox"/> 일반경쟁 <input type="checkbox"/> 지명경쟁 <input type="checkbox"/> 수의 <input type="checkbox"/> 기타		

①공종: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세 부 공 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비행기항로 항공유도 도로터널 지하도로터널 차도 관개수로 상수도 하수도 지조성 공역 그 밖의 토목시설	다동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신타워·호텔·쇼핑센터 사무신타워 오피스빌딩 아파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용서건물(11층 이하) 관공용서건물(12층 이상) 항공우주 병원 천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창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정유사 원자력발전소 화학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중합처리장 폐수중합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②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2. 하도급계약내용										
가.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등록번호	변경 사항			
							변경사항	변경유	변경일자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나. 하도급계약										
계약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기간(일)	도급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후금액	변경후착공일	변경후준공일		
다. 4대보험료 등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무비	원	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반영율	(%)	반영율	(%)	반영율	(%)	반영율	(%)	반영율	(%)
금액										
부담방법	<input type="checkbox"/> 일괄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일괄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일괄 <input type="checkbox"/> 개별	
라. 공동도급 지분을 및 분담내용(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명	지분을(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도급금액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후지분을	변경후분담내용	변경후금액			
	%									
	%									
마. 보증금										
예치업체	예치일	④보증종류	⑤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채권자	
④보증종류: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금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⑤예치방법: 보증서, 현금, 유가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그 밖의 예치방법을 직접 적습니다.										
바. 공사대금지급조건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회	준공금지급조건	준공()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일							
사.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구분	수령 일치	회차	기성 접수 일	기성 금액	수령일	신용 계좌 번호	수령금액	수령금액 누계	잔액
신입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균급금									

4. 참여자현황

가.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류 및 등급(자격증)	배치 기관	현장담당주
양호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현장담당주: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전담수입관리 등을 기재합니다.)

나. 자라도급계약

계약 도급 순 일치	자라도 급 받은 일치	대도 자	법인 (주연) 등록 번호	주소	계약 금액	계약 최종일	공수 기간	일공 및 등록 번호	현장 기술자	(7) 대급 지급 방법	자라도급대급보증서		
											(8) 도부 리부	(9) 도부내용	(10) 도도부 수준
					원								
					원								
					원								

- (7)대급지급방법: 현도급 일치 지출, 환주자 직접 지출
- (8)도부리부: 도부, 도도부
- (9)도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환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금 등 보증서내용을 기재합니다.
- (10)도도부 수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1. 협회일치로 등록된 일치로서 협회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2. 2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1년의 자라도급액이 1천만원 이하
 4. 환주자 직접 지출
 5. 기타(도도부 수준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대역한 일치	(11)전입기체명	전입기체등록번호	(12)대역기간	(13)대역금액
				원
				원
				원

- (11)전입기체명: 전입기체관련명 식별명, 원호 1에 따른 27자의 전입기체를 말합니다.
- (12)대역기간: 전입기체별로 기재하며, 원지 대역금액이 총 또는 원 단위로 지급된다라도 전체 대역기간 및 전체 대역금액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13)대역금액: (12)대역기간의 경우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납품한 일치	납품받은 일치	법인(주연)등록번호	납품일	제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품금액
								원
								원

(14)1년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 ※ 작성 시 주의사항
 1. 자라도급 전입공수대장 등보(기체)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도수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전입공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시역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역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 별첨사항이 3과 이상인 경우 등).

본사소재지	주업종	등록번호

실적내역표별로 해당공종에 ○표			
20 토목	30 건축	40 산업·환경설비	50 조경

회사명 :	
대표자 :	(사

(1) 일련 번호	(2) 공사명	(3) 세부 공종	(4) 공사 지역	(5) 발주자명 (6)하도 급 공사 는 원도 급자명기 재	(7) 도급종류 1. 도급 2. 하도급 3. 자기공 사	(8) 발주자	(9) 계약 방법	(10) 입찰 형태	(11) 계약 연월	(12) 착공 (예정) 연월	(13) 준공 (예정) 연월	(14) 당년도계약액 또는 이월계약액 (공동도급공사는 지 분기재)				(15) 당년도기성액								
												총계약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총계약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상기 항목[(7)항목제외]들은 뒤쪽을						참조하여				연	월	연	월	연	월	연	월	연	월	연	월			
소 계																								

30300-08911 일
99.7.8 개정승인

※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 세부공종별(3) 부호코드		
(일 반)	(전 문)		(토 목)		(건 축)
10:토목건축	61:실내건축	81:강구조물	210:일반도로	251:치산·치수및사 방하천	311:단독주택 및 연립주 택
20:토 목	62:토 공	82:온실설치	211:고속화도로	260:관개수로및농 지정리	312:저층아파트(5층이하)
30:건 축	63:미장방수	83:철강재	212:고속도로	270:상수도 1천mm 이상	313:고층아파트(6~15층 이하)
40:산업설비	64:석공사	84:삭도설치	213:도로교량	271:상수도 1천mm 이하	314:초고층아파트(16층이 상)
50:조 경	65:도 장	85:준설	214:철도교량	272:정수장	320:상가백화점쇼펍센터
	66:조 적	86:승강기	220:댐	273:하수도	321:사무실빌딩
	67:비계구조물	87:가스시설 1종	230:항 만	281:택지조성	322:오피스텔
	68:창 호	88:가스시설 2종	231:공 항	282:공업용지조성	325:인텔리전트빌딩
	69:지붕판금	89:가스시설 3종	240:일반철도	290:기타토목시설	330:호텔숙박시설
	70:철근콘크리트	90:난방 1종	241:고속철도		340:관공서건물(11층이 하)
	71:철 물	91:난방 2종	242:지하철		341:관공서건물(12층이 상)
	72:기계설비	92:난방 3종	243:도로터널		342:학 교
	73:상하수도	93:시설물유 지	244:철도터널		343:병 원
	74:보링그라우팅		250:간 척		350:전통양식건축
	75:철도궤도				351:교회·사찰 등 종교용건 물
	76:포 장				420:원자력발전소
	77:수 중				421:화력발전소
	78:조경식재				422:열병합발전소
	79:조경시설물				423:수력발전소
	80:건축물조립				
					352:기타 문화 유적건물
					360:경기장은동장
					361:전시(展示)시 370:창고, 차고, 터 널 건물
					371:공장, 작업장 건물
					372:기계기구시 (플랜트제외)
					373:위험물장소
					380:기타
					(산업환경설비)
					410:계월소 및 석 화학공장 등 업 생산시설

※ 공사지역 (4) 부호코드	※ 발주자별(8) 부호코드				※계약방법별 (9)부호코드	※입찰형태 별(10) 부호코드	※ 공 의 특 질 기재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남 38:경북 39:제주	(민간부분) (1)제조업 950:음식료품 951:섬유류 952:나무제품 가구 953:종이제품 인쇄 954:화학,섬유, 석탄 955:비금속광 물 956:제1차금속 (철강업) 957:조립금속 (기계) 958:기타제조 업	(정부기관) (2)비제조업 960:농림수산 부 961:광업 962:전기·가 스·수도 963:도소매·음 식·숙박 964:운수,창고, 통신 965:금융,보험 966:건설업(분 양입대는 부동산업 예포함) 967:사업·서비 스업 968:사회·및개 인서비스 업	(자치단체) (3)기타 41:기획재정 부 42:행정안전 부 43:국방부 44:교육·과학 기술부 45:문화체육 관광부 46:농림수산 식품부 47:지식경제 부 48:삭 제 <2008.3.14 > 49:환경부 50:보건복지 가족부 51:노동부 52:국토해양 부 53:삭 제 <2008.3.14 >	(기타)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91:공공단 체 92:국영기 업체 93:주한외 국기관 94:해외외 국기관	1:장기계속공사 2:P.Q공사 3:대안입찰 4:설계시공일괄 입찰 5:실시설계입찰 6:기타	7:일반경쟁 8:지명경쟁 9:제한경쟁 10:수의계약 11:기타	-건축공 (㎡)등 -담공사 저수용량 -상하수 총길이(m) -충유관 길이(m) -고속도 널:총길이 -발전소 (Kwh)등 -간척공 기재 -쓰레기 량(t)등 -폐수하 처리량(t) -에너지 (㎡)등 ※ 공사구 의 특 질 기재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2.9.18>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및등록번호		
공 사 내 역					
⑤공 사 명				⑦총 공사금액	
⑥현 장소 재 지 (번지까지 기재)				백만원	
⑧공종(건설산업기 본 법 시 행 규 칙 제25조)				⑨ 인·허가기관	
				인·허가연월일	
⑩ 계약 연월	⑪ 착공 연월	⑫ 준공 (예정) 연월	⑬당년도 계약액 또 는 이월금액		⑮당년 도 기 성 액
			⑭총 계약 금액		⑯전년도까지 누계 기성액
			⑰당년도기성지급액		⑱전년도까지 누계 지급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억 억 억 만 만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억 억 억 만 만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억 억 억 만 만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억 억 억 만 만
⑲기타(공사의 규 모·공법·공동 도 급내역 등)					
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수급인) ·상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 소 ·전화번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세부공종별(4) 부호코드

토 목		건 축		산
210:일반도로	244:철도터널	311: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343:병원	410:제철
211:고속화도로	250:간척	312:저층아파트(5층이하)	350:전통양식건축	장등
212:고속도로	251: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313:고층아파트(6~15층이하)	351:교회·사찰등 종교용 건물	420:원자
213:도로교량	260: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314:초고층아파트(16층이하)	352:기타문화재·유적건물	421:화력
214:철도교량	270:상수도 1천㎜이상	315:주거사무실 겸용건물	360:경기장·운동장	422:열병
220:댐	271:상수도 1천㎜이하	320:상가백화점·쇼핑센터	361:전시(展示)시설	423:수력
230:항만	272:정수장	321:사무실빌딩	370:창고, 차고, 터미널 건물	430:집단
231:공항	273:하수도	322:오피스텔	371:공장, 작업장용건물	공사
240:일반철도	281:택지조성	325:인텔리전트빌딩	372: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440:쓰레
241:고속철도	282:공업용지조성	330:호텔숙박시설	373:위험물저장소	사
242:지하철	290:기타 토목시설	340:관공서건물(11층이하)	380:기타	450:플랜
243:도로터널		341:관공서건물(12층이상)		460:하수
		342:학교		461:폐수
				462:그 밖
				510:수목
				520:공원

※ 공사지역별(5) 부 호 코 드	※ 계약방법별(6) 부 호 코 드	※ 계약방법별(7) 부 호 코 드	※ 공사규모등(15) 기재
11 : 서울 32 : 강원 21 : 부산 33 : 충북 22 : 대구 34 : 충남 23 : 인천 35 : 전북 24 : 광주 36 : 전남 25 : 대전 37 : 경남 26 : 울산 38 : 경북 31 : 경기 39 : 제주	1 : 장기계속공사 2 : P.Q공사 3 : 대안입찰 4 : 설계시공 일괄입찰 5 : 실시설계입찰 6 : 기타	7 : 일반경쟁 8 : 지명경쟁 9 : 제한경쟁 10 : 수의계약 11 : 기타	-건축공사 : 총수 및 연면적(m ²)등 -댐공사: 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 -상·하수도 : 직경(m/m) 및 총길이(-송유관 : 직경(m/m) 및 총길이(m) -고속도로·교량·지하철터널 : 총길이 -발전소공사 : 발전용량(Kwh)등 기 -간척공사 : 간척면적(m ²)등 기재 -쓰레기소각시설 : 1일 소각량(t)등 -폐수·하수종말처리장 : 1일 처리량(-에너지 저장시설 : 저장용량(m ³)등 ※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록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 고
				종 목	등 급	자격증 번호	취 득 연월일	갱 신 연월일	

30300-092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장비명 (시설명)	규격 (시설번지)	등록번호 (시설면적)	중기차대 번호	등록 연월일	검사 유효기간	소유자	중기(시설) 소재지

30300-270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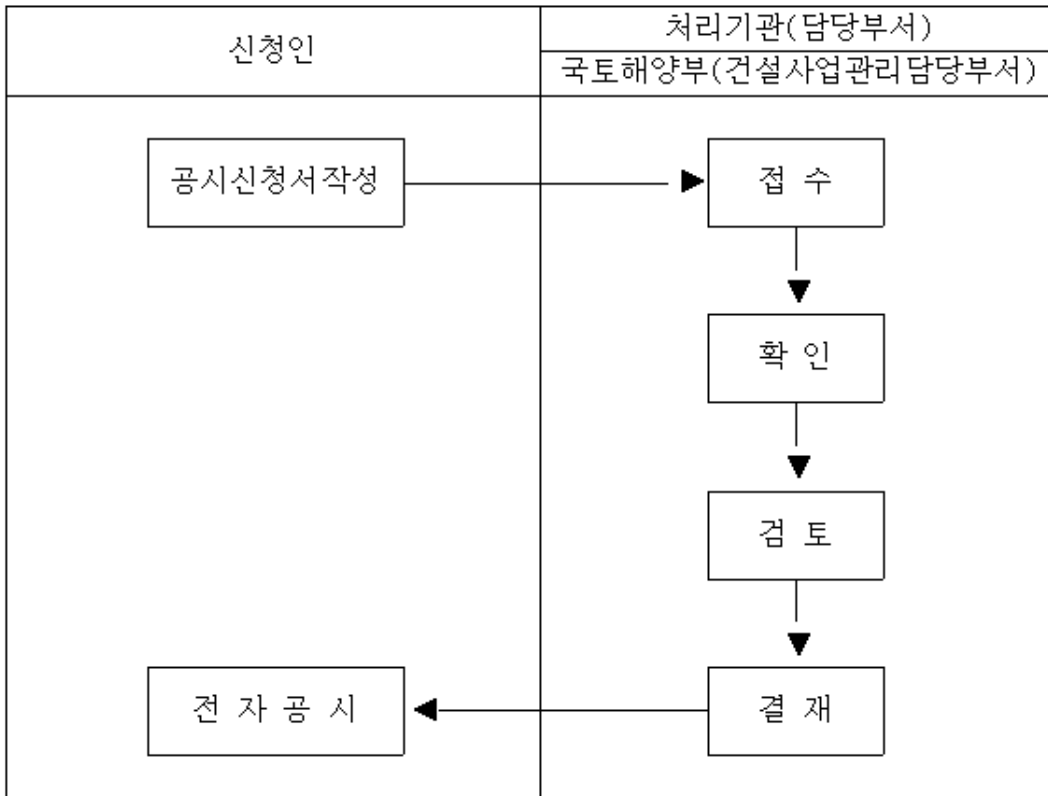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					처리기간
					195일
신청인	①상 호 (회 사 명)		②대 표 자		
	③주된영업소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보 유 업 종				
⑧건설사업관리실적			⑨건설사업관리 주력분야		
⑩건설공사·건축설계·엔지니어링사업·감리용역 실적					
⑩-1. 건설공사실적			⑩-2. 건축설계실적		
업종	기성금액 (백만원)	총기성금액 (백만원)	용도	건축허가면적 (㎡)	총건축허가면적 (㎡)
토 목			주 거 용		
건 축			상 업 용		
산 업 · 환 경 설 비			공 업 용		
조 경			문 교 / 사 회 용		
전 문 공 사			그 밖의 용도		
⑩-3. 엔지니어링사업실적			⑩-4. 감리용역실적		
전문분야	계약금액 (백만원)	총계약금액 (백만원)	감리종류	계약금액 (백만원)	총계약금액 (백만원)
			전면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 공 감 리		
			검 측 감 리		
			공 동 주 태 (300세대이상)		
그 밖의 분야			다중이용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개무정보현황표					
5.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들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등 증명서류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들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210mm×297mm(신문 용지 54g/㎡(재활용품))

기재요령

1. ㉞보유업종 :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등 보유업종을 기재합니다.
2. ㉟건설사업관리실적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에 기재합니다.
3. ㊱-1. 건설공사실적중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란 제1호 내지 제29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별 공사실적을 기재합니다.
4. ㊱-3. 엔지니어링사업실적 : 전문분야란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부문중 건설부문의 19개 전문분야중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6개 분야까지 기재하되, 7개 분야 이상인 경우에는 합계하여 그 밖의 분야란에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일련번호 : /총 건)			
원 공 사 개 요			
①공 사 명			
②발 주 자 명			
③해 당 공 종		④세부공종	
⑤공 사 지 역			
⑥도 급 종 류		⑦공사기간	
⑧공 사 발 주 방 식		⑨총공사금액 (백만원)	
건 설 사 업 관 리 실 적			
⑩계 약 명			
⑪발 주 자 분 류			
⑫사업관리계약형태	<input type="checkbox"/> 원도급/단독계약 <input type="checkbox"/> 원도급/공동계약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계약형태	⑬계 약 일	. . .
⑭사 업 관 리 개 시 일	. . .	⑮사 업 관 리 만 료 일	. . .
⑯계 약 및 기 성 금 액 (백 만 원)	총계약금액		
	지분액및비율	(%)	
	기 성 금 액	누 계	
		전 년 도	
⑰대 가 지 급 방 식			
⑱업 무 범 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기재요령

- ③해당공종 :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④세부공종 : 아래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토 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 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건 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터 ·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 층 이하)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등 종교용 건물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차고·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공 종
산업·환경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 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조경공사	·수목원 ·공원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 ⑤공사지역 :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합니다.
- ⑥도급종류 : 도급공사, 자기공사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⑧공사발주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시공분리입찰, 그 밖의 발주방식으로 구분하여 기
재합니다.
- ⑩발주자분류 : 아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민간부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발주자
제조업	비제조업			
○음·식료품 ○섬유·가죽·신 발 ○목제품 ○종이·출판·인 쇄 ○석유·화학제 품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조 립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정 밀 ○운송장비 ○그 밖의 제조 업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수 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 박·음식업 ○운수·창고·동 신업 ○금융·보험업 ○부 동 산·임 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보건·복 지업 ○그 밖의 서비 스업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 식 계 <2008.3.14> ○국방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 식 계 <2008.3.14> ○그 밖의 정부기 관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제주도	○공공단체 ○공기업 ○주한외국기 관 ○해외

- ⑦대가지급방식 : 일괄지불방식, 공 사비비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및 그 밖의 방식과 구
분하여 기재합니다.
- ⑨업무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업무로서 주요과업내
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신설 2002.9.18>

건설사업관리자재무정보현황표			
(당기 : 년 월 일까지 전기 : 년 월 일까지)			
▣대차대조표 정보			
과 목	당기(단위 : 원)	전기(단위 : 원)	비 고
자 산 총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 채 총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 본 총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본조정			
○자산총계=유동자산+고정자산 ○부채총계=유동부채+고정부채 ○자본총계=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자본조정			
▣순의계산서 정보			
과 목	당기(단위 : 원)	전기(단위 : 원)	비 고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 매 비 와 관 리 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이 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재무지표 정보			
재 무 지 표	당기(단위 : %)	전기(단위 : %)	비 고
유 동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매 출 액 순 이 익 률			
총 자 본 회 전 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건설사업관리관련인력보유현황표

■총 인력보유현황

직종 합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기능인력	건축사	변호사	
	소계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소계	토목	건축	기계	기타	기능장			

■건설사업관리 프로젝트 참여인력현황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직위	자격내용		건설사업관리 주요경력							
				자격종목 (기술등급)	자격등록번호 (취득일)	발주자명	사업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업무	수행기간	경		

기재요령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중 기술자격자는 자격종목을 기재하는 경우는 자격종목란에 해당직무분야 학경력자로 기재합니다.
2.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경우 기술등급란에 특급 또는 고급이라고 기재합니다.

297mm×210mm(신문용지 5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공사명							
①공공	공종 :	세부공종 :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도급방법	<input type="checkbox"/> 단독도급 <input type="checkbox"/> 공동도급(<input type="checkbox"/> 공동이행방식 <input type="checkbox"/> 분담이행방식 <input type="checkbox"/>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input type="checkbox"/> 장기계속공사 <input type="checkbox"/>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도급금액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소계		소계	
⑦경비(공과잡비)		⑦경비(공과잡비)	
⑧일반관리비		⑧일반관리비	
⑨이윤		⑨이윤	
⑩직접시공 금액 합계		⑩하도급(예정)금액 합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직접시공계획 등보(기지)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지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계대표자가 기지합니다.

※ 기지 요령

1. ㉠공종 : 다음 중 선택하여 기지합니다.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정공사
세 부 공 종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수목원
	고속화도로	저층아파트(5층 이하)	산업생산시설	공원의 조성공사
	고속도로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원자력발전소	
	도로교량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화학발전소	
	철도교량	주거·사무실겸용건물	열병합발전소	
	댐	상가·백화점·쇼핑센터	수력발전소	
	합판	사무실빌딩	김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공함	오피스빌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일반철도	인텔리전트빌딩	하수통말처리장	
	고속철도	호텔·숙박시설	폐수통말처리장	
	지하철	원공서건물(11층 이하)	그 밖의 산업설비	
	도로터널	원공서건물(12층 이상)		
	철도터널	학 교		
	간척	병 원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전동양식건축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지, 유적건물		
	상수도 1천mm 이상	경기경운동경		
	상수도 1천mm 이하	진시(燕示)시설		
	정수장	장고, 차고, 터미널건물		
	하수도	공경, 작업장용건물		
백지조성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공업용지조성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토목시설	그 밖의 건축물			

2. ㉡계약일 ㉢과공일 ㉣군공예정일 ㉤도급금액 : 공사의 계약연월일, 과공연월일, 군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을 기지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과공연월일, 최초군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지합니다.

3. ㉥세부공종 :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지합니다.

예시) - 토목공사 :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지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 건축공사 :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장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경공사, 지붕 및 흙등공사, 잠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지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 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조정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지합니다.

4. ㉦경비(공과장비) : 간접노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입차료, 복리후생비, 보편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역비·교통비·통신비, 세공과과금,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산자·고용건강영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기타 법정경비를 말합니다.

5. ㉧일반관리비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분합니다.

6. ㉨이윤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이윤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분합니다.

7.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를 합산한 금액(㉠+㉡)은 도급금액(㉤)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수급인	① 공 사 명					
	② 상 호 및 대 표 자					
	③ 영 업 소 소재 지					
	④ 하 도 급 사 유					
하수급인	⑤ 상 호 및 대 표 자					
	⑥ 업 종 및 등 록 번 호					
	⑦ 영 업 소 소재 지					
	⑧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하도급내용	⑨ 공 종					
	⑩ 하 도 급 내 용(율)		도급액(하도급 부분): 하도급(예정)금액: 하 도 급 율:			
	⑪ 하 도 급 내 용 (예정·변경)일		⑫ 하 도 급 공사기간			
			착공(예정) : 준공(예정) :			
	사회 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⑬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일괄 <input type="checkbox"/> 개별
	⑭ 산재재해보상보험					<input type="checkbox"/> 일괄 <input type="checkbox"/> 개별
	⑮ 국민연금보험					
	⑯ 국민건강보험					
	⑰ 노인장기요양보험					
⑱ 퇴직공제부금					<input type="checkbox"/> 일괄 <input type="checkbox"/> 개별	
* ⑩~⑱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①공사명		
수급인	②상호 및 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재하도급 승낙사유	
하수급인	⑤상호 및 대표자	
	⑥영업소소재지	
재하수급인	⑦상호 및 대표자	
	⑧업종 및 등록번호	
	⑨영업소소재지	
재하도급내용	⑩공종	
	⑪재하도급내용(비중)	하도금액(A): 하도금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B): 재하도급 부분 비중(B/A):
<p>「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재하도급 승낙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수급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귀하</p>		
첨부서류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1부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사본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는 건설업자가 합의한 합의서 사본 3. 다시 하도급받는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또는 근로자의 임금을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하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는 건설업자가 합의한 합의서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입찰금액	원				
하도급 예정계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원도급 내역금액	③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input type="checkbox"/> 일반경쟁 <input type="checkbox"/> 제한경쟁 <input type="checkbox"/> 지명경쟁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input type="checkbox"/> 실적 <input type="checkbox"/> 협력업체 <input type="checkbox"/> 시공능력평가액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일반경쟁 <input type="checkbox"/> 제한경쟁 <input type="checkbox"/> 지명경쟁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input type="checkbox"/> 실적 <input type="checkbox"/> 협력업체 <input type="checkbox"/> 시공능력평가액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일반경쟁 <input type="checkbox"/> 제한경쟁 <input type="checkbox"/> 지명경쟁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input type="checkbox"/> 실적 <input type="checkbox"/> 협력업체 <input type="checkbox"/> 시공능력평가액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일반경쟁 <input type="checkbox"/> 제한경쟁 <input type="checkbox"/> 지명경쟁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input type="checkbox"/> 실적 <input type="checkbox"/> 협력업체 <input type="checkbox"/> 시공능력평가액 <input type="checkbox"/>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div> 귀하					
※ 유의사항 ①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③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08.6.5>

하도급계획서(계약시)										
공사명										
수급인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당해년도)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②하도급 공사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식	공사명	물량	하도급 금액		
								③하도급 부분금액(A)	④하도급 계약금액(B)	⑤하도급율 (B/A)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 :						
귀하										
첨부서류										
1. 예정공정표 1부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 유의사항										
①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하도급 공사: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③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하도급 계약금액: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⑤하도급율: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현장배치확인표						
성명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인연월일	확인

30300-18911일

97.7.3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8.3.14> (앞 쪽)

조사·검사공무원증 소속 직명 성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사 진 (2.5cm×3cm)
위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지사	

30300-27311 일 85mm×65mm
99.7.8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위 쪽)

<p>건설산업기본법</p>	<p>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개무관리상태·시공상황 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99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p> <p>1.-7. (생략)</p> <p>8. 제49조제1항 또는 제91조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	<p>제88조 (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1.-5. (생략)</p> <p>6.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개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 제출 요구</p> <p>7.-14. (생략)</p>

[별지 제27호의2서식] 삭제 <2007.12.31>

건설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주 소			
피신청인	⑥성 명			
	⑦상 호		⑧전 화 번 호	
	⑨업 종		⑩등 록 번 호	
	⑪영 업 소 소 재 지			
⑫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⑬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구비서류			수수료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30300-27411민

210mm×297mm

97.7.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8.3.14>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존 실적신고 업종	실적전환 희망업종	연도	실적전환 희망금액 (직접시공금액)	건수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중 토목실적)		2007			
		2006			
		2005			
소 계					
		2007			
		2006			
		2005			
소 계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중 건축실적)		2007			
		2006			
		2005			
소 계					
		2007			
		2006			
		2005			
소 계					
조경공사업		2007			
		2006			
		2005			
소 계					
		2007			
		2006			
		2005			
합 계					
<p>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국토해양부장관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첨부서류</p> <p>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 2.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07.12.31>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내 역							
⑤공사명			⑥총공사금액		백만원		
⑦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⑧공사지역				
⑨공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공종을 말합니다)			인·허가 기관				
			⑩ 인·허가 연월일				
⑪ 연도	⑫해당연도 기성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인 천		해당연도 직접시공분		⑮ 계약 연월일	⑯ 착공 연월일	⑰ 준공 연월일
			⑭세부공종 (전문공사 업종)	⑭기성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인 천			
			계				
⑩기타(공사의 규모, 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 직접시공분에 대한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상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 소 ·전화번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복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내역																							
⑤복합공사명																							
⑥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⑦공사지역																	
⑧원도급공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공종을 말합니다)																							
⑨연도	⑩계약 연월일	⑪착공 연월일	⑫준공 연월일	⑬복합공사 기성액								업종별 기성액(기 증명사항)											
												⑭세부공종 (전문공사 업종)		⑮기성액									
				조	천	백	십	만	천	백	십	만	천	조	천	백	십	만	천	백	십	만	천
														계									
⑯기타(공사의 규모·공법·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하도급 복합공사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